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평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6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1월 21일

발 의 자: 김평남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기대, 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 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이정인, 장상기, 전석기, 황규복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2018년 8월 금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 지반침하 및 같은 해 9월 발생한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는 모두 토지 굴착에 따른 흙막이 안전 관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측정되지 못해 발생한 인재 사고라고 봐야 할 것임.
- 이에 건축공사에 따른 흙막이 설치 시 실시간 위험을 인지하는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건축법」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시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1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(토지 굴착에 따른 흙막이 계측관리) ①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시 설치하는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“흙막이 계측관리”와 “스마트 계측”은 다음을 말한다.

1. 흙막이 계측관리: 흙막이 벽체의 설계 및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및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접 구조물 거동, 배면 지반, 지하수 수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행위
2. 스마트 계측: 센서 등과 같은 측정 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위해 데이터 인식(자동 수집) 기능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, 데이터 처리, 자동 결정 기능 등 복합적 기능이 결합되어 실시간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한 계측시스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51조(토지 굴착에 따른 흙막이 계측관리) ①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발 생 방지조치 시 설치하는 흙막 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“흙막이 계측관리” 와 “스마트 계측”은 다음을 말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흙막이 계측관리: 흙막이 벽 체의 설계 및 시공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차 및 오류를 보 완하기 위하여 인접 구조물 거동, 배면 지반, 지하수 수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행위 2. 스마트 계측: 센서 등과 같은 측정 기구를 통해 수집된 데 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위해 데이터 인식(자동 수집) 기능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, 데이터 처리, 자동 결정 기능 등 복합적 기능이 결합되어 실시간 데이터 제공 및 활용

이 가능한 계측시스템